

# [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계와 정치권의 참담한 주장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 승인 2020.12.18 19:55



지난 4월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백승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에서 세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의무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점, 인과관계추정 조항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다.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참사를 꼼꼼히 살폈다. “이게 없으면 안되겠구나” 생각하는 내용만 꼭 담으려고 했다. 정말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기업의 책임을 줄여보려 하는 시도가 정말 안타깝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다? 그렇지 않다. 산안법과 근기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무조항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김용균 노동자가 일할 때 2인1조가 되었더라면, 설령 몸이 컨베이어에 쓸려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비상줄을 잡아당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은 산안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삼성중공업은 배 설계도를 수정해서 지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 두 개가 위험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었다. 그 크레인에 노동자 수십 명이 부딪혀 죽거나 다쳤을 때, 그 크레인의 운영과 관련한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을까?

설계도를 바꾼 것도 최고경영책임자고 인력을 적게 배치해 2인1조를 하지 못하도록 도급금액을 결정한 것도 최고경영책임자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규정된 조항만으로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산안법과제조물책임법 등의 구체 의무조항을 원용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것이 포괄적이라 문제라면, 경영책임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누군가 위험에 처할 때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 이야기해야한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재계와 정치권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위헌이다? 구의역 김군이 사망하기 전 똑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났다. 그런데 모두 '작업자과실'이었다. 지금도 작업자 과실이란 이름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이 책임을 떠안고 죽어간다. 구의역 김군처럼, 김용균노동자처럼 유가족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적인 힘을 모아 원인을 밝히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은 '작업자과실'이란 이름을 안고 죽어간다.

지금도 일상적인 산재 은폐가 벌어진다. 여수 대림 산단 폭발사고나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에서도 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사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그런데 산재나 참사로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들이 나서 싸워 사업주책임을 밝혀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둘 것이니까? 모든 정보를 기업이 다 갖고 있는데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이미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이 있다. 모든 죽음에 대해 인과관계추정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5년간 법 위반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고에 대한 증거인멸과 조사방해등에 추정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한다.

위헌이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기업에 의한 산재와 참사 은폐를 어떻게 막을지 여당과 재계는 답해야 한다.

50인 이하 사업장을 유예하겠다? 대다수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해당 사업장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산안법의 온갖 의무를 면제해주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계속 죽고 계속 다쳤다. 이들이 정녕 무슨 죄인가.

정말 50인 이하 사업장이 걱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행만 유예하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광주 조선우드 김재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이미 그 사업장에선 또 다른 사망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용자는 큰소리치며 유가족 눈물을 빼내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죽어도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는가.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시행하고 기업이 제대로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도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사람들은 여러 산재와 재난, 참사를 들여다보며 혹시나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노심초사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 누구라도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하청이거나 또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러선 안 된다. 법안 조항 하나하나가 유가족과 동료들의 피눈물이었다. 재계와 정치권이 함부로 '위헌'이니 '포괄적'이니 말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10만 명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 간절히 바란다. 법안 통과가 늦춰져 지금도 죽어 나갈 누군가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



